

# 2026년 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 강의계획서

일정 2026년 4월 20일(월) ~ 5월 1일(금), 10회

교재 FORTUNE 민사소송법 사례집(출간 예정, 실강 제공)  
+ 변리사 법전(각자 지참)

강의시간

14:00 ~ 17:30  
목 : 18:30 ~ 22:00

강사

김 춘 환

변리사 민사소송법 최선의 선택 !!!

김춘환 민사법을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 강사 소개

####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前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現 중앙법학회 이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변리사스쿨 민법, 민소법 담당

#### 2. 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Fortune 민법 (2025),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6), ACL 刊

###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http://cafe.daum.net/chunzivilprozess)

## □ 변리사 2차 민소법의 사례 특징

### I. 들어가며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의 특징은 민사소송법이 소송법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소송법은 하나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는 요건 심리, 본안 심리로 나뉜다. 특히 요건 심리는 소송요건 심리를 말하는 것이고,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 요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요건 심리란 소의 적법 요건을 심리하여 소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소는 광의(=넓은 의미)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소란 법원, 당사자, 청구(=소송물)로 구성된다. 따라서 소의 적법성이란 법원에 대한 적법 요건, 당사자에 대한 적법 요건, 청구에 대한 적법 요건을 말하고, 이를 심리하여 부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소를 각하하는 판결(소송판결)을 하는 것이 요건 심리의 핵심이다.

이에 반하여 본안 심리란 본안 즉 청구권(Anspruch)=소송물에 대해서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권이 실체법상 이유가 있으면 청구인용, 이유가 없으면 청구기각, 일부가 이유가 있으면 일부인용(=일부기각)하는 판결(본안판결)을 하게 된다. 특히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체법의 문제이므로, 사실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물을 심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 등의 심리방식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될까? 사실 본안 심리 즉 본안판결은 실체법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리하는 문제이므로, 본안 심리 부분을 출제를 하면 민사소송법 문제가 아니라, 민법 문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사례는 요건 심리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을 수험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요건 심리’에 보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례형 답안의 기본적인 구성과 그에 따른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II. 사례형 답안 서술 방식(IRAC)

(Issues, Rules of law, Application of Rules to Facts, Conclusion)

#### 1. 분쟁 사례의 등장 -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민사소송법 사례 문제는 甲, 乙, 丙이나 A, B, C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분쟁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그 분쟁을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므로, 그런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도록 하는 것이 2차 사례형 민사

소송법 문제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등의 목차를 먼저 달아서, 당해 사례에서 물어보는 문제나 쟁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여야 한다. 아래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변리사 <2025년 문제>

甲은 A로부터 X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乙이 위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대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乙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이 사건 변론에서 甲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는 위 건물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이 문제는 甲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청구 속에는 건물매수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 없이도 그와 같은 내용의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즉 甲의 의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의 변경(제262조)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면, 원고 甲에게 건물명도청구로 청구의 변경을 지적하는 석명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이 경우 ‘문제의 소재 내지 쟁점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 I. 문제의 소재

甲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청구 속에는 건물매수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 없이도 그와 같은 내용의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제203조, 민법 제643조, 제283조).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제262조)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면, 원고 甲에게 건물명도청구로 청구의 변경을 지적하는 석명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제136조). 그리고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원고 甲이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사례에서 문제 되는 민사소송법, 민법 관련 조문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643조, 제283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법원이 판결문을 적는데, 참조 조문을 판결 이유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사안에서 문제 되는 ‘조문’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언급해서 채점자에게 관련 조문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변리사 <2025년 문제>

2.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을 인수승계 신청하면서 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은 甲의 인수승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이 문제는 인수승계가 문제가 된다. 특히 甲이 乙로부터 丙에게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의 소재

소송승계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승계인이 종래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소송의 인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포괄적 승계가 발생하여 당사자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는 당연승계와 계쟁물에 관한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어 당사자를 변경하게 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신청승계)는 참가승계와 인수승계로 나뉜다. 사안에서는 인수승계가 문제된다(제82조).

2. 관련 문제 내지 쟁점의 설시

사실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한 쟁점이 파악만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공부의 깊이에 따라 쓰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언급하면서 풍부한 내용을 언급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실한 답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특히 쟁점은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설을 적을 때, 고유의 학설 명이 있다면 그 학설 명을 적어야 한다. 학설 이름을 제1설, 제2설, 제3설 하는 식으로 적는 것은 채점자에게 학설 명이 기억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였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는 적지 않아야 한다(다만 시험장에서 학설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 학설 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1설 등으로 적거나 이런 견해, 저런 견해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학의 학설은 정(正), 반(反), 합(合)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런 순서대로 학설을 암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판례를 적는 경우에는 판례는 어떠한 사안에서 “어떻게” 판시하여 무슨 입장이라고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송물이론에 대하여 구소송물이론을 취하는 판례를 언급한다고 하면 「“判例는 보통과 중자를 옥과 중자로 속여 판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배배상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대판 1963.07.25. 63다241 등).”고 하여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이다.”라고 서술한다. 이 경우 ‘사안’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신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판시사항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신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입장’을 서술한다는 것은 그 판례에 대한 학자들의 평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채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한다면 판례에 부여된 배점과 채점자에게 좋

은 인상을 심어 고득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토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을 자신이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언급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사안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신이 지지한 입장에 따른 결론만 언급하지 말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되는지도 언급을 하여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면, 판례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되는 지를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은 실무법이므로, 실무의 입장 즉 판례와 다른 결론을 취한다면 판례에 따른 결론을 언급해서, 자신이 실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3. 사안의 해결(사안에의 적용), 결론

사안의 해결은 사례 문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을 서술할 때 주의할 것은 ‘물음’에 답을 하라는 것이다. 판결에서 판결의 적법성의 묻고 있다면, 판결이 적법한지 아니면 부적법한지가 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야 한다. 판결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데, 판결이 정당하다 아니면 부당하다고 답을 한다던지, 당사자나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4. 사안의 해결

법원은 甲에게 청구변경에 대하여 석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다(제136조). 따라서 甲이 이에 따라 청구를 변경하면 법원은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지급하고 이와 상환으로 乙은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 4. 사안의 해결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데,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건물철거이행청구권이다. 그런데, 丙은 乙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계쟁물을 인수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송물은 건물철거이행청구권이므로, 물건적 청구권이어서, 甲이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 인수승계를 신청하였으면, 丙도 乙로부터 건물철거이행의무를 승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수승계는 적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은 甲이 丙에게 Y건물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인수승계를 신청한 경우이다. Y건물의 이전등기말소는 건물의 전소유자인 乙이 丙에게 구할 사안이지, X토지 소유자 甲이 Y건물의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권원은 전혀 없다. 따라서 丙이 Y건물에 대해서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승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제82조 제1항의 소송목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甲의 丙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甲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공부 방법

#### (1) 강사의 강의에 충실

2025년을 기준으로 62회가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들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소위 찍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쟁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 가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강사가 어떤 문제를 찍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소문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법에 대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중요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답안지에 대한 현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2) 사례집

변리사 시험을 비롯한 2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집대성 하여, 이 사례집만 제대로 보면 2차 민사소송법에서 확실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4.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폼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폼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개요

### 5. 공부 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시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
- (5) 판례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6)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책을 읽어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속에 정리해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회수	일시	중요쟁점
제1회	4/20 (월)	<p>*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li> <li>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li> <li>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li> <li>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li> <li>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11)</li> <li>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li> </ol>
제2회	4/21 (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법인격부인]</li> <li>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li> <li>9. 당사자자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자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 53, 54)]</li> <li>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li> <li>11.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li> </ol> <p>* 과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과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li> <li>13.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li> </ol>
제3회	4/22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li> <li>15.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勞 14)</li> <li>16.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li> <li>17. 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li> <li>18. 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勞 14),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li> <li>19. 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li> <li>20. 소제기의 실제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li> </ol> <p>* 배상명령</p>
제4회	4/23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li> <li>22. 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li> <li>23. 채무부존재확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li> <li>24. 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li> <li>25. 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li> <li>26. 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li> <li>27. 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勞11)과의 관계(司 51)</li> </ol> <p>* 적시제출주의, 이의권</p>
제5회	4/24 (금)	<p>*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li> <li>29. 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li> <li>30.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li> <li>31. 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li> <li>32. 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li> <li>33. 무변론판결(司 45)</li> </ol>

		<p>*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p> <p>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p>
제6회	4/27 (월)	<p>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p> <p>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p> <p>*유일한 증거(辨 47)</p> <p>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p> <p>*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p> <p>38.문서제출명령(司 47)</p> <p>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p> <p>* 증거보전(辨 46)</p> <p>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p> <p>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p> <p>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p> <p>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p> <p>*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4.소송종료선언(司 43)</p> <p>45.재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p> <p>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p> <p>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p> <p>48.화해권고결정</p>
제7회	4/28 (화)	<p>*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9.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p> <p>50.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p> <p>51.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p> <p>52.상계항변과 기관력(勞 14)</p> <p>53.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관력의 표준시</p> <p>54.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p> <p>55.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관력의 시적한계(司 43, 49)</p> <p>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p> <p>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p> <p>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司 40, 55)</p> <p>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司 40)</p> <p>* 가집행선고, 소송비용</p>
제8회	4/29 (수)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p> <p>*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p> <p>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p> <p>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p> <p>*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p> <p>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p> <p>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p> <p>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p> <p>66.중간확인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p> <p>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p> <p>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p>

<p>제9회</p> <p>4/30 (목)</p>		<p>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p> <p>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p> <p>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p> <p>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p> <p>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p> <p>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p> <p>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p> <p>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p> <p>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p> <p>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p> <p>*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p> <p>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p> <p>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p> <p>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p> <p>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p>
<p>제10회</p> <p>5/1 (금)</p>		<p>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p> <p>*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p> <p>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p> <p>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p> <p>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p> <p>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p> <p>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p> <p>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 勞 14)</p> <p>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p> <p>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p> <p>*특별항고(法 11)</p> <p>92.제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p> <p>93.제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p>